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5. 4. 29.(수) 14: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

##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4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5-18-078)

####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동 계획을 고시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방송법령상 고시 제정의 위임 근거가 없어 우선적으로 이를 의결하여 적용하고, 현재 개정 추진 중인 방송법에 위임 근거가 신설되는 경우 고시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허가·승인 대상은 밑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15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기본계획안 수립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관련 분야는 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가 있는데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배점은 밑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허가·승인 여부 결정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심사기본계획 수립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2016년 이후에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심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의결안건> 4페이지에 채점 대항목이 있습니다. 지상파TV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은 1,000점 중에 250점입니다. 종전보다 얼마나 상향 조정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여기에 있는 항목별 점수들은 기존에 있던 점수들을 대부분 분류만 재분류해서 집어넣은 것이고, 사실상 거의 동일한 점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대항목 점수는 동일한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 아래에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부분과 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부분의 배점이 제일 높는데 종전과 같다고 한다면 소항목 배점을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첨부자료를 보시면 중분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분류가 지상파 같은 경우 공익성과 관련해서 4가지 항목으로 배점되어 있었는데, <붙임> 6페이지를 보시면, 그 부분들이 중분류 <2>번, <3>번 항목 2가지로 통합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대분류의 큰 점수는 그대로 있고 소분류에서만 조정한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주로 중분류...

○ 김재홍 상임위원

- 기본계획의 중분류...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시행세칙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시행세칙이라고 하면 보통 심사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부분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세부지침으로 수립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항목이 많고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크게 움직이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지상파 TV의 경우 중분류 2항에 보면 공적책임·공정성이 90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80점으로 되어 있는데, 중분류에서 공정성 항목이 전보다 얼마나 올라간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했을 때도 90점이었습니다. 공적책임·공공성 이행실적과 실현계획으로 해서 각 40점, 50점을 배정해서 90점이었기 때문에 그 점수를 합치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중분류도 배점이 조정된 것이 없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각 매체별로 항목들이 서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심사 기본계획에서는 배점을 조정한다기보다는 그런 항목들을 조정·통합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진행됐지 배점을 크게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배점이 변경된 것은 종편 부분이나 뒷부분에 있는데, 여기에는 방송평가가 기존에 350점 반영되던 부분에서 400점으로, 저희가 방송평가를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점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상파TV는 그런 변화도 없고, 종편에서 공정성·공적책임이 많이 올라간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안건 10페이지의 종편을 보시면 <2>번 항목에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 110점이었는데 이번에 120점으로 10점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상파TV에서는 대분류, 중분류의 배점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종편에서만 바뀐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종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방송평가가 350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400점으로 늘어나면서 밑에 있는 <4>번 재정적 기술항목을 기존보다 약간 낮추었습니다. 그 부분을 낮추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부분을 10점 높이고, 그런 약간의 일부 미세조정은 있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 심사 배점기준이 종전과 비교해서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바뀐 것은 방송평가가 350점에서 400점으로 늘어나서 50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50점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해, 경영 부분, 경영·재정실적 부분을 일부 40점 정도 감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대분류 기준으로 하면 10점 정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지적되어 온 것은 보도의 공정성 문제와 균형 있는 편성 비율의 문제 그리고 콘텐츠 투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배점 조정이 없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와 관련해서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부분과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부분의 점수를 10점 정도 추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경영·투자 실적 부분의 적정성 부분에도 점수가 배점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은 아까 제가 지적한 항목의 배점이 일부 상향된 것 같이 보이는데, 지상파TV의 경우에도 방송의 공정성과 콘텐츠 투자 분야가 계속 강조되어 오고 있으므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배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하는 대분류, 중분류에 변경이 없다면 큰 변화, 큰 개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시행세칙을 정할 때 그 틀 내에서 할 수 있을 텐데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만약 콘텐츠 투자 부분을 강화한다면, 심사항목 하단에 '재량평가'라고 해서 10%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재량평가 항목으로 조금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기본적인 배점이긴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부심사기준을 만들

때 보다 타이트(tight)하고 까다롭게 만든다면 보다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와 별도로 재허가 재승인의 배점 항목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또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개선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점수를 만들 때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점 만점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도 개선안은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큰 틀의 점수변화를 주기보다는 체계를 바꾸고 이것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2가지 목표가 있지요. 기본계획과 고시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재허가·재승인 때 우리가 중시하는 방송의 공정성이나 콘텐츠 투자를 개선하기 위해 채점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것인데 후자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100%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은 저희가 '14년 2월부터 10월까지 연구반을 운영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문가 토론회와 방송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긴 했는데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아까 고 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 정도 여유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부계획이 만들어지면 그때 어느 정도의 보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이 2016년부터 시행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2015년도, 금년 방송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15년 말에 재허가 시기가 돌아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달 초 위원회에서 심사계획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016년 1월 1일부터지만 실질적으로 2016년 말 도래하는 사업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 배점 항목을 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난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재허가·재심사 때 우리가 좀 더 배점을 높여서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상황에 관련해서 배점표의 어떤 부분이 재난방송과 관련한 평가 부분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일단 개략적인 것은 제가 설명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고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붙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붙임> 6페이지 지상파입니다. <3>번 ⑥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붙임> 10페이지 종편입니다. <3>번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다시 말씀 드리면 지상파 <3-6>, 종편 <3-7> 같은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송평가'라고 400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총 배점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지상파의 경우에는 방송평가가 만점이 900점인데 그중에 60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편의 경우에는 만점이 700점인데 그중에 65점이 재난방송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방송 부분을 저희가 강조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좋은 틀이 있는데 그것은 재허가·승인 당시에 만약 재난 이슈가 클 경우에는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번을 보면 모든 사업자에 대해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기준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심사기준을 수립할 때 방송평가에서도 재난방송 배점이 강화되고, 또한 엄격하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담당하는 방송기반국과 협의해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러니까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가 400점인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 배점에 큰 변화는 없지요? 원래 원안에도 있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평가 내용은 많이 변화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단 현재까지의 방송평가에는 지상파나 종편에 점수가 배점 되어 있는데, 방송기반국에 확대 인해서 보니까 연말까지 방송평가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재난방송 관련 배점이 없었던 위성·유료방송, SO 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추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강화 되면 400점 부분에 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아까 전영만 국장이 말씀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익성 관련 프로그램에 배점을 하고 있고, 재난방송 이슈가 크게 터지게 된다면 전체 배점의 10%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해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해에 한해서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여지도 일부 두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현재 방송평가에, 플랫폼사업자는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SO와 위성방송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배점을 분명히 다시 해서 거기까지도 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재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주 좋은 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이라는 상황이 매년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그해에 꼭 평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우리가 재난에 대해 이 부분을 반영 시켜서 가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참고로 여기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상파 같은 경우에 ②번, 또 종편 ②번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부분이 있는데...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 부분은 세부 심사기준을 만들 때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겠지만,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방송법 제5조와 제6조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난방송은 아시다시피 방송법에는 없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세부심사기준은 그 당시에 확정하겠지만, 저희가 현재 예시로 가지고 있는 것에는 빠져 있는데, 재난방송도 공적책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는 것도 적극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심사계획 수립에 따라서는 재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제4조, 제5조, 제6조 위주로 평가가 되지만, 재난방송이 큰 의미를 차지하면 그것도 역시 공적책임·공공성의 한 부분이 될 테니까 반영이 가능할 여지도 있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리고 우리가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감점은 보통 방송평가에서 반영이 많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했을 때 1년치와 2년 치는 방송평가가 반영되어서 들어가고, 당해 연도는 방송평가 그다음에 나오는 관계로 재허가 때 바로 감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6페이지 단서를 보시면 감점기준은 기본적으로 방송평가에서 적용하는 감점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평가규칙을 개정할 때 감점기준을 강화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재허가 심사 때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감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동일하게 감점할 예정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은 추후 방송법에 위임근거가 마련되면 고시로 제정할 내용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번에 처음 보고할 때,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시허가 승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이것은 법이 아닌 기본계획이고 추후에 고시로 들어갈 내용인데, 그렇다면 '재허가·승인', '거부', 그다음에 650점 미만이라면 '조건부'로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기본계획상에는 '재허가·승인',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 이렇게 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정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보고할 때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시 허가나 승인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제도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당시에 시작할 때는 그 부분까지 마련해서 연구용역까지는 마쳤습니다. 다만, 사업자의견수렴 결과 아무래도 사업자의 방송운영이나 법적지위가 약간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당시의 연구계획에는 근거조항 정도 들어가는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묶어서 하기 보다는, 이 부분이 사전에 공표하는 것이 빨리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전공표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검토해서 임시 허가제 도입 방향, 이런 구체적인 운영내용들은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사무국에서 판단해서 이번에 재허가 심사기준, 기본계획안만 먼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상황의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를 하다 보면 재허가 불허 접수, 재승인 불허 접수를 맞고도 별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조건부'로 다 내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불허임에도 불구하고 불허 이후의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조건부를 붙여서 재허가나 재승인을 내줬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용역도 하셨고 지난번 보고 때 언급도 했던 만큼 이와 관련된 제도정비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의결하면 실질적으로 2016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임시 허가나 임시 승인제도를 범제화해서 적용한다고 해도 앞으로 빨라야 2017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연구도 있고 저희 내부 검토도 있고, 다만 사업자들 일부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보고접수를 이미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허가 승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이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본계획의 의미는 최소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아주 크게 높여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객관성·투명성·공정성들을 다 종전보다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계획안이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앞에서 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서둘러서 이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사항, 심사항목 내지는 배점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까 세부기본계획을 의결할 때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레버리지(leverage)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결국에는 심사사항, 심사항목별로 배점도 의미가 크지만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점수를 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50점이라고 하는 분기점을 가지고 있지만 매년 재허가·재승인할 때 마다 점수 주는 것이 800점, 900점이라면 배점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650점 언저리에서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점수를 준다면 배점의 5점, 10점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은 운영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임시 허가·승인 제도 관련해서 말씀 드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더 짧게 준다든지, 아니면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도의 차이입니다. 임시적으로 한다는 것과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짧게 갖고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한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한 연구를 꼭 하고 계신데, 실제로 실익, 유효성을 잘 따져서 지금의 제도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것이 항상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할 때는 기존 제도와 상대비교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서 이번 기본계획이 잘 준비가 되어서, 틀은 종전의 재허가·재승인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사전적으로 예측 가능성도 높이면서 시의적절한,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이 일어난 해에는 또 그런 측면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 시의성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준비된 계획은 두가지 측면에서 종전에 저희가 운영해 왔던 제도보다는 크게 진전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결국은 운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재허가·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시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이번에 임시 허가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는데, 임시 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하니까, 시행령에 반영하

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에 넣으면 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법을 고쳐야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법을 개정해야 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허가 같은 경우에는 전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파법령이나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 저희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검토 중이라는 것을 여기에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임시 허가제를 검토하기 전에는, 지금까지 재허가·재승인을 해 준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말하자면 재허가 거부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조건을 붙여서 그냥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형식적이다” 하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심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조건을 붙이는 대신 좀 더 실효성 있는,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서 기한을 설정해서 임시 허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 중에 조건을 이행하면 정식 재허가로 전환하는 제도를 검토했던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연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방송법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을 적극 검토해야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실질적이다,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  
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임시 허가 또 임시 허가 못  
지않게 중요한 것이 방송시설의 양도·양수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기본계획 형태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방송사업자들의 의견도 일부 수용을 하셨다고 들  
었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지난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방송사업자 의견수렴까지 해서 이번 기본적인 형태,  
틀을 종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사업자들로부터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배점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부 방송사업자들은 방송 배점에 대해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반영은 못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국 배점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5-18-079~08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9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입니다. 작년 하반기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위반여부를 조사하였고, 조사 대상은 자진신고한 (주)배달통, (주)판도라티비, (주)더블유컨셉코리아 등 5개 사업자와 언론보도 등을 통한 (주)호산나미디어, (주)이지모바일 등 4개 사업자, 총 9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중에서 (주)배달통과 (주)더블유컨셉코리아는 개인정보 유출시점이 작년 11월 28일 이후로 개정된 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위반사항 및 처분규정입니다. 먼저 (주)배달통은 음식 배달을 중계하는 휴대폰 앱 등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관리 서버에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판도라티비는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해당 고객관리 서버에 별도의 방화벽 및 접근제어 정책을 설정하지 않아 외부에서 접속하여,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밖에 (주)이지모바일 등 7개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 서버에 침입탐지시스템 미설치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의 9개 사업자 모두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배달통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주)인디에프와 (주)이지모바일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나눔커뮤니케이션과 (주)한국낚시채널은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수탁사업자 및 개인정보취급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주)배달통과 (주)이지모바일은 14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정

보통신방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新 정보통신방법 제28조를 위반한 (주)배달통과 舊 정보통신방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인과관계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주)판도라티비는 과징금을 처분하고, 그 밖의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되 (주)배달통과 (주)판도라티비는 과징금과 과태료 동시 처분이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주)배달통의 정보통신방법 제28조제1항 위반과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이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대한 기본과징금에 가중·감경하여 총 6,23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통신방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의 기본과징금에 각각 가중·감경하여 총 1,72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방법 제31조제1항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이나, 이와 관련된 매출액이 적고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판도라티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방법 제28조제1항 위반과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 이하(1억원 이하)이고, 관련된 매출액에 대한 기본과징금에 각각 가중·감경하여 총 1,90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이지모바일입니다. 정보통신방법 제31조제1항 위반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 기준은 매출액의 1% 이하이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적고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 미미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명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방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9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1,000만원입니다만 각각 사업자별로 가중·감경하여 5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7페이지 아래와 8페이지 중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방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인디에프는 감경하지 않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이지모바일은 감경을 해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방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한국낚시채널과 (주)나눔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상의 위반 사업자별 처분안의 세부적인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이 중에 과징금은 총 9,865만원이 되었고, 과태료는 총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4월 중에 행정처분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이기주 상임위원

- 음식 배달과 관련해서 중계해 주는 앱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배달통의 경우에 위반한 것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관리적 조치보다는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른 사전동의, 이것은 훨씬 더 기본적인, 또 지켜야 할 사항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그러니까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규 위반사례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요즘은 특히 온라인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도 일어나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은 많이 시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배달통의 경우에 이런 위반행위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자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음식배달 중계 앱들이, 사업자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이용자들, 폭증하는 이용자들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안 갖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배달통 외에 다른 음식배달 중계 앱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배달통인 경우에는 이번 위반사업자에 대해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총 5개 조항 중에 3개 조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 초기 확장 단계일 수도 있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의는 아니겠지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또 법정대리인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자는 나중에 자진신고는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였고, 그 이후에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초기에,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법령이나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주)배달통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주)판도라티비 이야기입니다. (주)배달통 관련해서 또 말씀 드리면 방통위의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주)배달통 같은 이런 위반사항을 딱 봤을 때 최근에 갑자기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사업자들에 대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홍보 내지는 사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아주 취약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뒤에 <붙임>자료에 (주)배달통이 언제 사업을 개시했는지 보니까 그 자료는 없는데, 몇 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용자정책국에서 이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앱들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액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판도라티비 같은 경우 벌써 비즈니스를 한 지 오래 됐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개인정보 관련 제도들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 왔는데..., 그리고 또 사무처에서 주요 온라인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작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주)판도라티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업력도 오래 됐고, 이용자도 비교적 많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차원에서 그동안 제도 내지는 교육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사업 초기 이후에 여러 가지 재무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개인정보 관련 시스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이번에 신고 이후에 전체적인 실태점검을 해 본 결과, 관련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투자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통위가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제재도 해 오고 있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은 어쨌든 배달 앱 관련해서 최근에 이용이 많이 늘고 있는 데 대해 우리의 행정력을 집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또 업력이 오래된 온라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경영 사정이 안 좋으면 그동안 수집해 놓은 개인정보의 보관, 관리 이런 것들이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얻어서 그런 쪽에 행정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생활 밀착 분야'라고 해서 기존에는 대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실태점검이나 조사를 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이든 부가통신사업자일지라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주)배달통이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유사한 업종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곳의 연락처는 다 파악할 수 있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사인력의 한계 등등으로 모든 곳을 다 조사해서 이런 위반행위가 있는지 발각해 내기는 참 힘들지만, 그 업종의 대표적인 업체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관련 업종에게 전파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조치들이 이미 되어 있으면 좋고,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교육·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달앱, (주)판도라티비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아무래도 이런 데는 회원 수들이 굉장히 많은 업체이기도 하니까 우선 급한 대로 교육·홍보를 먼

저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때 시기를 봐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배달통은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신고해 온 것이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현장 조사를 언제 나간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전체에 대한 것이고 ㈜배달통에 대해서는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구체적인 시기는 금년 1월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보고내용을 보면 위반사항이 나와 있지만 ㈜배달통 같은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 서버에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아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심결한 내용으로 보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기존 사례와 비교해 보면 대단히 중대한 위반사항이지 않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붙임 2> 피심의인 제출의견 및 검토의견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보안장비 및

솔루션 도입 등은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음. 5월 말까지 보안장비 등을 설치 완료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업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비용 등의 문제인데 지금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니까?

○ **업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해당 시스템과 관련하여 용역을 준 상황이고, 아직 정확한 금액 규모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서 보고자료를 보면 관련 매출액이 5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 매출이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관련 시스템을 완비하는 5월 말까지, 그동안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예를 들어 동일한 원인으로 해서 동일하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들에 대해 별도로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업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회사 대표 쪽을 통해, 해당 개인정보 데이터를 백업 받아서 보관하는 기본적인 조치를 했고, 나머지 보안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구축은 용역을 줘서 계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이런 개인정보 유출의 신고가 있고 저희들이 조사가 나가게 되면 기본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이번 (주)배달통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것이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좀 더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고 소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업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주)배달통 같은 경우 신생업체지만 매출이나 이런 것이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이유로 해서 보안장비 구축을 5월 말까지 미뤘다는 것은, 사실은 그 회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것이 뒤로 밀려있는 것 아니냐, 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방침들이 여전히 경영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앞에 있지 않다, 그것이 걱정되어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해당 업체에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뒤에서 방청하시는 기자분들이 (주)배달통은 5월 말까지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혹시 쓰신다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사람들이 “아, 거기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침입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기사 쓸 때 약간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처분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시정조치나 제재방안에 교육의무를 부과할 규정이 있습니까? 이런 위반업체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교육을 몇 시간 받도록 하는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법령상 시정명령에는 교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이것을 보면 개인정보보호 책임의식이 없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대해 무지하든지,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기피하든지 그런 서너 가지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제재만 해서는 효과가 없고요, 여기에 보니까 작은 영세업체도 있고 대부분 보니까 지식정보업체들입니다. 이렇게 위반했으면 과징금, 과태료 말고 그런 개인정보보호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병과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을 규정으로 넣는 것이 어떤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심결서 나오기 전에 보고 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교육의무를 부과시키면 우리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자체적으로 시키든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시키든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한 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주)배달통 유관업체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길 때 사전 허락·동의를 받지 않고 넘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넘어간 개인정보에 대해 이미 사후조치가 취해졌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동의받지 않고 제3자, 400여개 지역업체에게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기하도록 명령했고, 그다음에 회원 가입 시 동의를 받도록 다 조치해 놓았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400여개의 업체가 이미 다 폐기했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확인이 다 된 것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 김재홍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시정명령 중에 '업무처리 절차개선' 이런 것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은 이것대로 나가고, 결국에는 이 중에서 규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큰 업체이더라도 법제도나 기술적인 이해가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법제도, 기술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직원들이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있는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통위가 직접 그런 것을 오퍼레이션(operation)하지 않으니깐 이 업체들에게 직원교육이나 기술적인 능력배양에 필요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프로그램들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이용, 활용 내지는 교육을 받도록 권고해 주면 저희가 법규 위반사례에 대해 제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적인 측면에서 지원도 해 준다는 의미가 아주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주)배달통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처음 회원 가입할 때 제3자 제공 여부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3자 동의를 해야만 꼭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지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원래 제3자 제공 관련된 부분들은 선택 동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그렇게 지도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업체들이 자진신고해 온 업체들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니요. 5개는….

○ 최성준 위원장

- 5개는 자진신고이고 4개가 언론보도인데, 이 5개 자진신고한 업체와 관련해서 보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가중·감경하는 항목 중에 조사 협조, 과실, 시정조치 여부 등은 고려가 되어

있지만 자진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안 두고 있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적 조정으로 과징금에서 일부 정도를 '협력' 차원에서 감경할 수 있는 부분만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협력 차원에서 과징금, 과태료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조사협력에 들어있습니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신고 차원에서 모두 일괄적으로 100분의 30 이상 감경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음부터는 좀 더 이러한 스스로 신고하고 시정조치 하는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때 고시 개정을 통해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얼마를 감경해 준다는 규정을 넣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뒤에 별표에 있는 과징금과 과태료 금액에 대해 다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다.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2015-18-08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볼보그룹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위너스, (주)엔포스시스템,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주)한국크레딧라이프 등 5개 법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지난 3월 허가신청 공고에 따라 총 7개 법인이 위치정보사업자를 허가 신청하

였습니다. 허가 신청법인별 주요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3일~4월 17일까지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허가 심사위원 명단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심사기준은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정보보호 조치계획 등을 심사하였고,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 시 적격으로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신청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법 제6조에 따라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보그룹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위너스, (주)엔포스시스템,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주)한국크레딧라이프 등 5개 법인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리니어블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쿨천사, 2개 법인에 대해서는 총점 및 심사사항별 점수 미달로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세부 신청법인 심사항목별 심사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사업자 허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의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나갔지만 아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최근에 (주)배달통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어느 정도 했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에 없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아닙니다. 지난번에 티타임 이후에 저희들이 관련 대표와 접촉해서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직 완료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아까 말씀 드렸던 제3자 제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치는 완료했지만 기술적 보호 조치에 관련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고 해당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해서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마 위치정보사업 만큼 이렇게 신규 허가 신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분야는 없을 것  
입니다. 매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치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위치정보 서비  
스 이용, 그리고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용자정책국에서  
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한 200여개 되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130여개 정도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700여개 정도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해 보면, 각종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들을 분석한다든지 알  
기 쉽게 그루핑을 해서 소개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사이트를  
만들어야 할지, 협회를 통해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다양한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이용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또 하나는 요즘 창조경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벤처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물론  
젊은 창업자들이 위치정보사업·서비스에 대해서 나름 인포메이션을 얻는다고 보지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집중적으로 제공하느냐 하는 고민들  
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방통위도 위치정보서비스 내지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용적인 측면이든 창업적인 측면이든 산업 육성적인 측면이든 공개,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정  
보들을 알려주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  
인 종합계획에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3페이지에 보면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재무 분야, 영업 분야, 기술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 분야, 이것도 영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영업 분야에 보니까 법률전문가들이 있고 교수들이 계시는데 위치정보사업 허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사회윤리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업 분야라고 하지 말고, 개인정보보호 분야라고 해서 법률전문가와 인터넷 디지털 윤리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그런 분야의 전문가이십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기술 쪽 관련하여 지난번 허가 심사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위치정보보호 관련된 보호 분야의 심사위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당시 구성된 기술 분야가 위치정보보호 관련된 측면의 심사인데 저희들이 정보보호 부분을 1명 더 추가해서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기술 분야 중에 두 분 이상이 위치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가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개인정보보호...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추가적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 측면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추후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프라이버시 보호, 윤리 관련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항목의 명칭이 아까 요구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는 기술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영업 분야는 주로 경영 측면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 분야는 법률 분야 전문가도 있고 경영 쪽 정보학 박사나 재정 분야 이런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항목 명칭에서, 위치정보사업 허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윤리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항목 명칭을 고치면 좋겠습니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대책」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유·무선 인터넷의 확산을 악용하여 불법유해정보 유통, 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사이버 폭력 등이 급증하는 추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강화, 이용자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법제도적 정비 및 교육·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표현의 자유와 권익보호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권한을 신설하는 한편, 신속한 분쟁조정 진행 등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게재자와 권익피해자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제19대 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방지 강화입니다. 인터넷상 음란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국제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긴급심의 및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하는 등, 자율규제 대상(현행 14개)과 참여사업자(현재 4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해외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근본적인 유통방지를 위해 시정요구의 실효성 확보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터넷상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물 차단 조치를 강화하

고, 악성 댓글, 사이버 왕따 등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학생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보급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터넷 윤리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입니다. 청소년기부터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습관 정착을 위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연령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정책 자문단 운영 등 정부와 사업자 및 이용자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은 생략하고, <붙임>으로 이상의 종합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붙임>자료까지 다 검토하고 몇 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윤리 혹은 인터넷 문화와 관련해서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통 문제입니까, 아니면 폭력적인 콘텐츠 확산입니까? 어떤 것을 가장 큰 논란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란물, 사이버폭력, 그다음에 게시글로 인한 여러 가지 명예훼손, 반공동체적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안건을 보고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나 기타 자료를 쭉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작 인터넷 윤리 부분에서, 문화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인터넷을 매개로 자행되고 있는 ‘혐오 표현’, 또는 ‘혐오 발언’의 확산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혹시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일종의 ‘혐오 범죄’라고 해서 선진국에서는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는데 제가 대략 찾아서 정리해 보니까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인종, 종교, 지역, 연령, 장애, 성적 지향 등을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조롱하거나 위협하는 표현”을 종합적으로 의미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은 표현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행동, 즉 혐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

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베’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일베사이트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 여성, 외국인, 특정지역, 그리고 특히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집단적인 혐오 표현 내지 발언이 사회·정치적 문제가 되었고, 오프라인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혐오 범죄 또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베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위원회에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사업자 측에서 일부 자정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베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갈등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적용해서 사후적으로 강력한 사법적 규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것들로 예방이나 근절이 되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상의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다거나 혐오 표현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사회·문화적 규범을 확립한다거나 민주적 소통과 사회 통합 관점에서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비사법적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동감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동감하시면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말씀하신 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말씀 드렸다고 ‘혐오 표현’, ‘혐오 발언’들이 현재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책 영역에서 다룰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문제로 국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정책 어젠다(agenda)로 정식으로 채택해서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윤리나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등과 관련해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관련된 제도의 정비까지 포함해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 개정안들이 2, 3개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이나 유럽 이런 몇 개 국가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혐오 표현’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입법 동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대책」에서,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정책영역에서 ‘혐오 표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책 어젠다로 다룬다, 이런 노력들을 최소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대책」의 개요를 확립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부분이고, 지금 고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 발언과 관련해서 사실은 형사적인 처벌은 모욕이든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혐오 표현, 발언이 원래부터 안 나오도록 교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에는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아무리 교육을 철저히 잘한다고 해도 그런 것을 완전하게 방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혐오 표현이나 발언이 인터넷 상에 올라왔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응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임시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임시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느꼈을 때 혐오 표현이나 발언에 해당된다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삭제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임시조치를 해서 혐오 표현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삭제하는 것이 우선 절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임시조치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이 국회에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임시조치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임시조치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혐오 표현'에 대해 임시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 빨리 인식시켜서 신속히 입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인터넷 문화의 향상을 위한 방안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고 전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의안은 음란물과 청소년 유해물 차단조치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인터넷 문화 향상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윤리를 강조해서 그것을 앞세워서 규제를 강화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와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규제가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직후에 SNS 등을 통해 번졌던 '혐오 표현'과 막말과 반공동체적인 발언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윤리교재에 수록하고 후대들이 그것을 교훈으로 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 인터넷 윤리교재의 편찬은 우리가 주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하고 있습니까?

○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인터넷 윤리교재를 잘 만들어서 교육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한 바 있습니까?

○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

- 교재가 편찬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요청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학교교육에서 디지털 인터넷 관련 분야나 교육은..., 아마도 소프트웨어교육은 정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

- 아직 정규 교과는 아닙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

- 실과나 기술 과정 과목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인터넷 윤리교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소프트웨어 과목 중 일부로 인터넷 윤리가 챕터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 윤리교육을, 아까 말씀 드린 측면에서 직접적인 통제나 규제보다는 자율규제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교육, 초·중·고의 학교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학교교육 과목으로 인터넷 디지털 윤리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교육부를 상대로 협의해 온 것이 있습니까?

○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

- 저희가 윤리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기타 인터넷 문화와 관련해서 정책을 펼 때 항상 교육부 쪽과 협조해서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까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과라는 것이 워낙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규 교과 과정으로 인터넷 윤리라는 것을 단독으로 넣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실과 과목이나 아니면 기술과정, 정보과정에서 인터넷 윤리 부분이 좀 더 많이 교육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협력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자기 전공과 자신의 업무를 가장 중요하다고 다 강조하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디지털 산업은 어떻게 보면 발전지상주의로 달려왔고,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인터넷 윤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심각하게 노정된 것이 바로 작년 세월호 참사 직후 SNS와 온라인 막말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계층도 아니고 그 참사의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막말 공격과 특정 지역에 대한 폄하와 여성 비하와 이런 반응들을 쏟아내는, 뱉어내는 그런 이용자들이 대해 우리가 규제를 강화하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시비와 논란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교육을 통해, 문화운동을 통해 해소하는 측면에서 아까 인터넷 윤리교재에 수록하자,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대로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대로 수록하고 학생들이, 후대들이 판단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자들, 네티즌들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은 누구도 시비를 안 걸 것 아니겠습니까?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부터 세월호 참사 직후에 벌어진, 노란 리본 달기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 확산시킨 그룹이 어떤 대학의 동아리 그룹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그런 인터넷 활동가, 개인이나 그룹들을 발굴해서 포상하고 장려해 나가는 것이 긍정적인 인터넷 문화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규제와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선정해서 포상해 나가고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인터넷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도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고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대책」은 방통위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

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종합정리한 종합대책 자체가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붙임> 5페이지를 보시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방통위의 4가지 큰 역할, 기능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권익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것 하나와 불법유해정보 규제 강화 그리고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강화, 그다음에 교육문화 캠페인인데, 사실 교육문화 캠페인도 많은 경우가 청소년을 주 타깃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 중 큰 줄기가 하나 있는 것이고,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규제는 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주로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서 방통위가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고 더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연중 계속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맨 뒤 페이지에, 관련되는 부처들이 하는 일과 관련된 것을 정리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망라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관련 부처의 주요 정책’ 이렇게 고치든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확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시는 것처럼 여러 관련 부처에서 청소년보호, 학교폭력 방지, 성폭력 관련된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통위가 하는 첫 번째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제외하고는 이 3가지 큰 기능이 전부 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종합 정리한 것을 관련부처에 전달해서 그 부처와 협업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방통위가 이렇게 큰 획의 4가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 국민들에게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이 제도를 잘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고 교육캠페인에 잘 참여토록해서 정책효과를 높이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정리된 것을 관계부처·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우리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의 효과성에 대해 진지하게 피드백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몇 회 교육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정말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하고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제공만 하는 형태로 여태까지 운영이 되어 왔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캠페인들이 6월에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실제로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과 함께 1년 중에 6월에, 저희도 그렇고 미래부도 그렇고..., 엇그제께 차관회의 때 보니까 여가부도 청소년박람회를 하면서 인터넷기업협회와 이와 유사한 것을 하는데, 효과성 측면에서 시기나 타이밍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바쁘시겠지만 특히 인터넷 윤리교육과 관련된 이런 행사에, 교육현장에 한 번 가서서 일일교사를 하시든 체험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중독과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렇게 ‘중독’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 중독은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용어는 다른데 콘텐츠는 유사한 이런 것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해 봅니다. 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문화재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민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나 리소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과 협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중에 실

효성이 가장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터넷문화재단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조금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종합계획에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박 국장님이나 최 팀장님은 어떤 아이디어나 액션플랜을 가지고 있습니까? '검토'라고 약간 자신 없게 써놓았는데, 그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위원장님께 무엇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까?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재단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형태를 본다면 민법상의 재단법인 형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단법인 과정에, 결국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재원 확보라고 보겠습니다. 참여하는 회원사들은 큰 문제는 없겠으나 결국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관련된 포털사업자가 됐든 그 밖에 통신사들도 필요성은 충분히 동감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재원 구성과 또 실제 재단의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도권의 문제나 회원사의 임원 선정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된 업계와 일단 충분히 대화를 해서 어떤 형태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도 측면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아마 이 부분에서는 큰 장애가 있거나 누가 또 발목을 잡을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터넷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재원 마련입니다. 재원 마련을 처음부터 아주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개별적으로는 그런 활동들을 민간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묶어서 통합적으로 시너지를 내보자는 차원이니까, 저는 생각은 크게 하되, 작게 출발해서 계속 서로 의미를 인식하면서 키워 나가는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리면 아까 제가 관련부처나 기관 등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엇그제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어느 부처나 기관에서 하는지 설명을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일정한 역할이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글자는 어디로 싹 다 빠져버린 것 같아서..., 제가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가 좋지 않으면 맨 뒷장에 이런 꼭지는 어느 기관이 이렇게 한다든지 병기를 해서, 어느 특정한 아이টে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법제도는 방통위가 하고, 실제로 오퍼레이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다든지, 또 인터넷진흥원이나 협회와 협업해서 하는 부분들은 방통위와 그런 산하기관이나 협회를 병기해 준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하면 전부 방통위가 하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 ○ 고삼석 상임위원

- <붙임> 21페이지에 있습니다.

○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

- 본문에 방침 등 별도로 제목으로 해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21페이지에 있네요.

○ 최성준 위원장

- 2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찾아보다가...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계속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 드리면, 이기주 위원님께서 인터넷 윤리교육에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와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자유학기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5월, 6월 중에 몇몇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가서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그런 활동에 폭넓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리면, 처음에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인터넷상 청소년보호 강화에 음란물 유통방지,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바(MOIBA: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를 통해 배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유료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여러 제품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필터링, 또는 경고를 해 주는 기능이 중요한 반면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필터링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에 이런 경고 메시지가 오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각각의 업체에서 만든 것마다 서로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아주 광범위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예측하지 않았던 불편함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범위가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고, 그 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딱 골라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4월 16일부터, 예를 들어 휴대폰 가입할 때 부모에게 음란물,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가 되면 가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과연 현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런 기능을 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들은 없는지 살펴서 나름대로 적절한 기준에 대해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논의해서, 아까 말한 한쪽이 치우치지 않도록 해서 효과도 보면서 또 청소년들의 권리도 되도록 보호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5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46분 폐회 】